# 항 소 이 유 서

사 전 2020 나 123605 물품대금반환

원고(항 소 인) ㈜유림정보시스템

피고(피항소인) (주)로봇기술

위 당사자 간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및 항소인,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 인정과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1. 원심의 판단 요약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계

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선해하여 미납품된 7개의 기계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러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점 또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과 손해액 또는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입증이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용접체커기에 대하여 2015. 6. 4. 25대, 같은해 12. 28. 10대를 대당 금1,000,000원(부가세 별도)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미리 그 대금인 금27,500,000원, 11,000,000원을 각 선지급<sup>1)</sup> 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용접체커기

<sup>1)</sup> 피고 회사가 재무상 어렵다는 이유로 선지급을 간곡히 요청해 와 원고 회사는 이를 배려하여 일정 수량의 발주를 예상하고 선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50개 최소 물량 발주를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일,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50개가 최소물량이었다면 50개의 대금을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총 28대를 발주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나머지 7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 위 납품과정에서 용접체커기의 사양이 소소하게 조금씩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핑계 삼아 피고 회사는 위 처음 계약할 당시에 없었던 추가대금을 요구하며 제 때 위 용접체커기의 납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추가 대금의 요구가 반복되고, AS 의 거부 및 거부예고, 더 나아가 나머지 용접체커의 공급거부를 공언하며 마지 막에는 연락까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답변서의 피고 회사의 답변 태도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 라. 2019. 7. 2. 이러한 피고 회사의 태도에 원고 회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 회사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송달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제대로 해결책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3. 피고 회사의 명백한 이행거절-채무불이행

피고 회사는 처음 구두계약에 없었던 최소 발주 물량과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나머지 7대 용접체커기의 공급을 이행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7대의 용접체커기의 공급 이행 거절 사유가 원고의 최소 발주 물량을 어기고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일방적이고 피고 회사의 입장에 경도된 왜곡된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7대의 용접체커기의 공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두로 한 최초 이 사건 용접체커기의 공급계약에서 최소발주물량이나 사양 변경에 다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 하였는바, 이를 기화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부당한 납품 단가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들어 주지 않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나머지 7대의 용접체커기의 공급을 거절한이행거절이 이 사건 청구원인의 핵심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7대의 용접체커기에 대한 공급거절이 아니고 진정하게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4. 이행거절(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나머지 용접체커기 7대의 공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 회사는 공급되지 않은 7대 기계에 대한 공급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그 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원고 회사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로 갈음합니다.

즉, 이 사건 청구원인의 핵심은 계약하고 그 대금까지 지급한 기계의 수량 일부(7대)를 피고 회사가 공급 거절하고 있으며, 이에 미공급된 기계 공급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기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5. 피고 회사의 주장 정리

피고 회사는 최소 물량 발주 약속이 있었기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개발비 등에 사용 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고 주장하나,

우선, 최소 물량 발주 약속은 없었으며, 가사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나머지 7대의 용접체커기의 공급을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대금을 반환받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만일, 피고 회사가 나머지 7대의 용접체커기의 원활한 공급과 A/S약속이 있었다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 결 론

즉, 원심이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한 영

대전지방법원 제3-1민사부 귀중